



物質特許導入은

關聯業界·學界·言論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美國이 物質特許導入問題로 또다시 兩國 工業所有權界에 거센 波紋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工業所有權 競爭이 아무리 戰爭에 비유될만큼 燥烈하다고는 하나 美國의 우리나라에 대한 物質特許導入 壓力의 가혹한 정도가 友邦으로서의 한계를 넘은 것일뿐 아니라 先進國으로서 開發途上國을 대하는 道理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 이를데 없다.

美國은 지난 81年 서울에서 열린 韓·美 상공장관 회담에서 우리측에 정식으로 物質特許導入을 요청한 이래 韓·美 通商交涉의 「단골메뉴」로 壓力を 가해오고 있다.

더우기, 美國은 政府·民間 차원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한 모든 수단과 경로를 동원, 物質特許導入 壓力を 끊임없이 가해오더니 끝내는 美通商法 第301條까지 발동, 이를導入하지 않

으면 貿易報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美國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世界 工業所有權 윤리를 이탈한 상식밖의 가혹행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더우기 美國의 바로 이웃인 캐나다, 오스트리아·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 等의 유럽 先進國들조차 아직 이를導入하지 않고 있다.

이유야 물론 自國產業의 發展과 保護를 위해서다. 이런 點들을 고려할 때 美國이 우리에게 각종 으름장까지 놓으며 物質特許의導入를 強力히促求하는 것은 너무 큰 것을 要求하는게 아닌가 하는 서운함까지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美國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마디로 美國의 物質特許 도입 壓力은 執拗한 것이다. 이 때문에 政府도 심각한 고민을

第1章：美國의 壓力과 우리의 立場

발등의 불로 다가서

90年代에 가서야 손을 쓸 생각이었던 物質特許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섰다. 이름조차 생소한 物質特許가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1年 10月 서울에서 열린 第10次

韓·美 상공장관회담때 부터이다. 그 이후 美國은 지난 7月의 韩·美 경제협의회때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物質特許導入」을 강력히 요구하더니 드디어 通商法 301條를 발동, 이를導入하지 않으면 貿易報復을 하겠다고宣言했다.

美國이 강력하게導入을 요청하고 있는 物質特許는 物質의 工程技術이나 製造方法에 特許를

時機尙早

反應總網羅

하고있다. 우리나라의 與件으로 보아 당장 導入이 不可能한게 사실이지만 언제까지나 美國의 壓力を 회피할 수 없는立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0年代 導入이 거의確定된 것으로 알려지던 物質特許의 早機導入說도 나돌고 있다.

이에따라 關聯業界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美國의 壓力이 아무리 執拗하다해도 物質特許의 導入은 結果的으로 先進國技術의 예속화가 분명하고 밟아기에 있는 國內 精密化學技術開發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이制度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친 다음인 90年代 이후에나 導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物質特許導入! 무엇이 問題인가?

業界·學界·言論의 反應을 總網羅해 본다.

<編輯者 註>

주는 일반 製法特許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製法特許보다 強力·廣範圍

物質自體에 대한 特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方法으로도 그 物質을 製造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特許權者の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制度이다.

예를들어 DDT의 경우 物質特許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처음 합성한 사람에게 特許가 주어져 製

總力大特輯

造方法을 달리 하더라도 使用料를 내지 않는한 누구도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製法特許는 製造方法이나 과정만 인정한다.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면 다른 사람도 이를 製造할 수 있으며 달리한 方法은 特許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特許使用料 없이 대부분의 醫藥品이나 農藥精密化學製品등을 生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物質特許를 인정하지 않고 製法特許만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物質特許는 化學物質·醫藥品·微生物·飲食物등 모든 物質이 포함된다. 化學工業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에서 自國의 技術保護와 판매를 獨占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 바로 物質特許制度이다. 따라서 작년 말 현재 特許制度를 인정하고 있는 전세계 172개 국가 가운데 90여 개 국가 정도가 物質特許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 브라질·멕시코·스페인·臺灣등 대부분의 신흥 풍업국가들은 物質特許制度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物質特許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技術先進國들이나 기술개발파는 무관한 後進國들이다. 거의 모든 開途國들은 이 制度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폐루」처럼 「도입은 하되 지극히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技術王國「스위스」도 국민소득이 1만1천6백달러였던 지난 78년에야 物質特許를 인정했고, 日本은 도입 압력을 26년이나 버티다 76년에 이 制度를 채택한 사실은 이제 결음마 단계인 우리의 精密化學工業의 형편을 볼 때 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醫藥界 年 5백億원 지불부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80%이상인 醫藥品業界에서는 物質特許가 인정된다면 당장에 지급돼야 할 特許料만도 연간 5백억원 규모에 이르러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면 아우성이다. 원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계산하기도 힘들며 막 궤도에

오른 수출은 완전히 경쟁력을 잃을것이 뻔하다는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이보다 더 딱한 경우는 많은人力과 開發費를 들여 外國企業이 독점하고 있는 物質을 똑같이 開發해 낸 국내 회사들이다.

가령 「다우케미컬」이 독점하고 있던 農藥原料 「사이틴」의 국내개발에 성공한 松原產業, 英國 ICI社가 독점하던 繡染色염료의 개발에 성공한 五榮產業, 원예용 살충제 「캡타풀」을 개발한 韓精化學 등은 物質特許制度가 導入되게 되면 그간의 끈질긴 研究努力이나 研究成果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야 할 실로 딱한 처지인 것이다.

技術隸屬・商品市場化우려

결국 物質特許는 美國과 같은 새로운 特許을

많이 개발하는 先進國에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개발능력이 뒤져있는 나라에게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입힐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国內 精密化學工業의 기술수준이 낮고 新物質 開發能力이 없는 상황에서 物質特許를 導入할 경우 상당기간동안 先進外國技術에 예속되어 국내산업이 견접을 수 없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최신기술의 선진국 獨占에 따라 로열티가 상승,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新物質開發에 필요한 고급기술 인력과 막대한 研究開發費 投資를 하자면 커다란 隘路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物質特許를 導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時機尚早이다.

2章：業界의 反應과 對應策

政府, 단계적 推進方針

美國의 物質特許導入 요청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政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 당장 導入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언제까지나 美國의 壓力を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政府는 지금까지 美國의 物質特許導入 요구에 최신기술의 선진국독점에 따른 로열티상승, 이로인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급인력 및 막대한 研究開發費 投資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 왔다.

政府는 특히 醫藥品 선호가 높은 우리나라가 物質特許를 導入할 경우 先進國企業들의 원료소비시장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外國人 特許權 남용으로 外國技術에 예속되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반대의사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政府는 美행정부의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중 외국인 著作權을保護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조치를 하고 88년에 國際著作權協約에 加入키로 했으며 物質特許 부문도 별도의 개방 스케줄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關係業界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物質特許의 導入은 結果的으로 先進國技術의 예속화가 분명하고 발아기에 있는 國內醫藥等精密化學技術開發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여 이 制度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친 다음인 90年代 이후에나 導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企業의 80%가 導入반대

本會가 155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調查 결과에 따르면 物質特許導入를 반대하는 업체가 76개(49%), 조건 부찬성이 49개(31.6%),

찬성 6개(3.9%), 부응답이 25개(15.5%)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찬성을 하는 쪽이라도 物質特許를導入하되 어떤 형태로든지 權利행사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체기업의 80.6%가 物質特許導入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物質特許導入를 찬성하는 業體는 주로 外國人投資企業, 外資導入業體 및 技術導入業體임을 감안할때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物質特許導入에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物質特許를導入할 적정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新物質 개발능력을 갖춘 90~95년이 32.0%, 95년 이후가 41.3%등으로 전체의 70% 이상이 90년이후에나 物質特許를導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들 관련업계가 物質特許導入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열티등의 추가 부담만 있을 뿐 우리측이 保護받을만한 物質特許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物質特許를 일단導入하고나면 지금까지 국내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주력해온 製法개발 위주의 연구사업은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新物質에 대해 特許가 인정되는 즉시 그와 관련된 독자적인 製法개발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導入앞서 事前準備 철저해야

결론적으로 말해 美國의 物質特許導入요구는 新物質 개발이 가능한 技術先進國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이제 겨우 절음마 단계를 가

고 있는 우리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원칙적으로 物質特許를 포함한 知的所有權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응책이 없는 현 단계에서 物質特許를導入하면 국내관련산업과 기술개발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物質特許導入에 따른 선진국들의 사전준비과정을 철저히 研究·檢討함으로써 物質特許導入에 따른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도입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美는 우리「스케줄」따르는 아량필요

美國은 自國의 이익에 앞서 우리의 실정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하리라 본다. 이제 우리나라は 工業化의 기초가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단계에서一方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協力이 아닌 破局을 끌고올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物質特許를 언젠가는導入할 압장이고 다만 우리의 스케줄을 따라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고보면 美國은 성급히 요구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현재 5백억 달러에 가까운 外債를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美國이 기회있을 때마다 「第2의 日本」이라면서 우리를 풀어붙이는 것은 韓·美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매우 위태롭게 할 소지도 없지않다. 이번 物質特許導入 요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방으로서 긴밀한 協調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章: 言論에 비친 學·業의 反應

物質特許民間協議會

新物質開發可能時 검토해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등 여러가지 여건을

놓고 볼때 아직은 物質特許를導入할 때가 아니다. 국내기술 기반이 취약한데 物質特許를導入한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은 피할수 있으나 얼마 안가 더욱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物質特許가導入되겠지만 문제는導入時期가 중요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방단

계를 벗어나 新物質開發이 가능하리라 본다. 物質特許導入의 檢討는 그때부터 해보는것이 올바른 判斷이다.

또 物質特許가 導入되더라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테크닉을 발휘해야 하며 物質特許導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事前準備 기간두고 신중 대처를

物質特許는 언젠가는 導入되어야 하나 충분한 事前準備와 對應策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導入할 경우 국내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시기와 방법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精密化學分野의 最尖端國인 스위스도 78年に 物質特許를 導入했고, 日本 역시 26年間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76年に 비로소 物質特許를 導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제도의 導入에 앞서 사전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物質特許導入 시기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과 연구개발능력이 성숙되고 제반 受容態勢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천년대 이후가 적당하다.

導入방법은 1단계로 1995~2000년 사이에 化學物質에 한해 物質特許를 허용한 다음, 2단계로 2천년 이후에 의약·농약 및 음식물 순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大韓藥品工業協會 · 韓國遺傳工學研究組合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리의 實情무시한 不合理한 처사

美國의 輸入規制強化와 後發開發途上國의 競爭參與 등 어려운 國際環境下에서 美國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工業所有權制度를 先進國形態로 전환하여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技術蓄積이 아직 微弱한 우리의 現實情을 度外視하고 自國의 利益만을 앞세운 不合理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同制度의 導入時 利害得失이 가장 큰當業界는 ▲特許制度의 比較分析 ▲製藥產業의 國際競爭力比較 ▲物質特許의 問題點 檢討 ▲各國의 特許政策動向 등을 中心으로 檢討하여 본結果 우리 產業의 技術水準을 持續的으로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特許法 目的에도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現行 製造方法特許制度를 계속 운영하여 우리가 獨自의으로 新物質을 開發, 評價할 수 있는 時點까지는 物質特許制度 導入을 留保하여 우리 產業과 經濟가 先進國의 特許獨占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李星範 <정밀화학공진 사무총장>

化學계 현재도 年17億달러 赤字

精密化學工業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발전이 긴요한 분야이다. 작년도의 化學工業 輸出은 6억4천만달러에 수입은 23억5천만달러로 무려 17억달러의 赤字를 내고 있다.

「스위스」는 78年 物質特許導入 당시 87건의 新物質을 개발해낸 상태였고, 日本이 76년 이 제도를 받아들일 때도 新物質開發 93건, 精密化學이 化學工業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가. 精密化學의 비중이 化學工業의 20%, 物質特許를 받을 수 있는 新物質開發 경험은 단한건도 없다. 우리 精密化學分野 수입 중 「유럽」비중이 50.6%, 日本 30.7%, 美國은 단 13.6%.

美國은 物質特許導入의 이익이 「유럽」이나 日本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金完柱 <成均館大學校 약대 교수>

國內基盤 構築때까지 留保돼야

物質特許導入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적어도 1995年 이전은 무리라고 본다.

현재 국내에서 공고된 精密化學分野의 特許 가운데 内國人과 外國人の 비율은 1대9이다. 物質特許의 導入은 바로 内國인이 갖고 있는 10%의 特許마저 앗아가겠다는 의도이다.

정부·기업에서 精密化學分野에 대한 과감한投資를 해 어느정도 基盤이 構築될 때까지는 物質特許導入은 留保돼야한다. 이 制度의 導入이 極藥처방이 될수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致命的일 것이 분명하다.

許尙勳〈永進藥品 技術管理室長〉

國民經濟的側面에서 檢討할 問題

우리나라 精密化學工業의 技術水準과 開發能力을 보면 우리는 65年부터 先進國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原料醫藥品 일부를 모방·생산해오다

가 70年대부터 부분적으로 국산화, 원료합성에 관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80年代 들어 外國特許의 제조공정을 개량해 國內 실정에 적합한 工程을 독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先進國에 비하면 幼兒期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物質特許의 대상이 되는 新藥物을 한번도 開發한적이 없는 우리의 水準으로 볼 때 앞으로 몇년내에 新藥物 출현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때문에 현재 많은 論難이되고 있는 物質特許의 導入문제는 特許政策 만의 문제가 아닌 產業政策의 문제이며 또한 國民經濟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檢討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8>

◇ 參考文獻 ◇

- ◎ 新聞: 每經·韓經·東亞·中央·서울·韓國 등
- ◎ 機關誌: 月刊發明特許·우리나라의 精密化學과 特許制度·知的所有權 保護制度에 關한 研究 등.

(案) 本會 發明振興事業 (内)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화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駛旋
- ◎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企業과 發明家 結緣 (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索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